

의안번호	제 200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최경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5월 31일

#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경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최경천, 박상돈, 박형용,  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,  
송미애

## 1. 제안이유

-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,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행정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 명칭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)

- “법무통계담당관” → “법무혁신담당관”
- “법무통계담당관실” → “법무혁신담당관실”

나.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
다. 용어 정비 (안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- “타업무” → “다른 업무” / “문의” → “상담”
- “즉석 답변” → “현장 답변” / “실과” → “부서”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등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

라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**도 법무통계담당관실**” 을 “충청북도(이하 “**도**” 라 한다) **법무 혁신담당관실**” 로 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**시군**” 을 각각 “**시·군**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**상담실운영은 도지사**” 를 “**상담실 운영은 충청북도지사**” 로, “**법무통계담당관 책임하에**” 를 “**법무혁신담당관 책임 하에**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법무통계담당관 또는 법무통계담당관실**” 을 “**법무혁신담당관 또는 법무혁신담당관실**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시, 군 또는 읍, 면, 동에 일정기간 파견,**” 을 “**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**” 로 한다.

제7조 중 “**법무통계담당관**” 을 “**법무혁신담당관**” 으로, “**해당실과 담당 사무관**” 을 “**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**” 으로, “**상담시**” 를 “**상담 시**” 로, “**임석요청시 타업무**” 를 “**임석 요청 시 다른 업무**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**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**” 을 “**상담 시 면담은 현장 답변**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**즉석**” 을 “**현장**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문의는**” 을 “**상담은**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전화문의는**” 을 “**전화상담은**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관련시군**” 을 “**관련 시·군**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**도고문변호사**” 를 “**도 고문변호사**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“**관계실과간**” 을 “**관계 부서 간**” 으로 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**상담실운영**” 을 “**상담실 운영**” 으로, “**기록유지**” 를 “**기록 유지**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2조(설치)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“이라 한다)은 <u>도 법무통계담당관실</u> 에 둔다.	제2조(설치) ----- -----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 법무혁신담당관실</u> -----.
제3조(상담범위) 상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1. 도 및 <u>시군</u> 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  2. 도 및 <u>시군</u> 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 3. ~ 6. (생   략)	제3조(상담범위) ----- -----.  1. --- <u>시·군</u> ----- -----  2. --- <u>시·군</u> -----  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운영) ① <u>상담실운영은 도지사</u> 의 명을 받아 <u>법무통계담당관 책임하에</u> 운영한다.  ② (생   략)	제4조(운영) ① <u>상담실 운영은 충청북도지사</u> ---- <u>법무혁신담당관</u> <u>책임 하에</u> -----. 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상담관) ① 상담관은 <u>법무통계담당관</u> 또는 <u>법무통계담당관실 업무담당사무관</u> 이 되며,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.  ② (생   략)	제6조(상담관) ① ----- <u>법무혁신담당관</u> 또는 <u>법무혁신담당관실</u> ----- ----- -----.  ② (현행과 같음)

<p>③ 상담관은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, 군 또는 읍, 면, 동에 일정기간 파견,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③ ----- ----- 시·군 또는 읍·면·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임석) 법무통계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실과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,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임석) 법무혁신담당관----- 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 ----- 상담시 ----- 임석 요청 시 다른 업무-----.</p>
<p>제8조(상담처리) ① 면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.</p> <p>② 서면 또는 인터넷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</p> <p>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, <u>관련시군</u>에 통지한다.</p>	<p>제8조(상담처리) ① 상담시 면담은 현장 -----, ----- 현장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상담은 ----- -----.</p> <p>③ 전화상담은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관련 시·군-----.</p>

<p>제10조(자문)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<u>도고문변호사</u>의 자문을 받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자문) ① ----- ----- <u>도 고문변호사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운영위원회) 상담실과 <u>도 관계부서</u>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며,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운영위원회) ----- <u>관계 부서</u> <u>간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2조(기록유지) 상담관은 <u>상담실 운영</u>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<u>기록유지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기록유지) ----- <u>상담실 운영</u>----- <u>기록 유지</u>----- -----.</p>

## 관계법령 등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#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

제7조(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)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관, 예산담당관, 세정담당관, 청년정책담당관, 법무혁신담당관을 둔다.<개정 2018.10.1.>

② 기획관리실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,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, 예산담당관·세정담당관·청년정책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18.10.1.>